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9호, 2021. 2. 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 신고)
 -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 제7장 보칙 <신설 2021. 2. 2.>
 - 제18조(수수료 등)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9호, 2021. 2.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4585, 35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 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2.>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이 끝난 날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

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관리주체의 주소
 -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 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3.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 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 이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 ④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 1.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 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3.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 1. 사업자등록증명
-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로 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 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 3.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하며, 다시 찾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 2. 2.>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 신고)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월 15일
 2. 개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월 31일
 3.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
- [본조신설 2021. 2. 2.]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및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인을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2. 2.]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1. 2. 2.]

제7장 보칙 <신설 2021. 2. 2.>

- 제18조(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금액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

부칙 <제819호, 2021.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 [별표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3]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교육수수료증
-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 [별지 제6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 [별지 제9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별지 제9호의3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의4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9호의5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별지 제9호의6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 [별지 제9호의7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 [별지 제9호의8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의9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 [별지 제9호의10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별지 제9호의11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수수료증
- [별지 제12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수수료증 발급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 [별지 제16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 [별지 제17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